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이유
 - 새마을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제3조제1항)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의 지급 대상중 우등장학생과 특기 장학생의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 삭제
 - 학과 성적을 100분지 50 이내로 정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규정 정비
 - 2) 장학생의 정원에 대하여(제6조)
 - 새마을 장학생 수혜자 수를 7%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
 - 3)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제9조제1항제2,3호)
 - 수혜받은 장학생의 재력을 구에서 알 수 없고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규정 삭제
 - 교육부예규 제247호('96.9.2)에 의거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규제정비
 - 4) 장학기금 확보에 대하여(제11조)
 - 장학금 기금 확보에 대하여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 규정은 기부금품관련규 제법에 위배되므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성만)

동 조례(안)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서 제3조제1항의 장학금지급 대상 지도자의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제3조제1항 2호의 우등장학생 요건인 성적기준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같이 폐지하는 것이고, 제11조의 장학기금확보 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을 지역새마을 지도자수 7%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며, 장학금 지급 및 정지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라 한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 2호의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0호
----------	-----------

제안년월일 : 1999. 9. 14.

제안자 : 배기환위원외1인

1. 수정(폐지)이유

-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라 한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 2호의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를 삭제한다는 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2호와 관련한 장학금지급대상의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사유

새마을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제3조제1항)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의 지급대상중 우등장학생과 특기 장학생의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 삭제
 - 학과 성적을 100분지 50 이내로 정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규정 정비
- 나. 장학생의 정원에 대하여(제6조)
 - 새마을 장학생 수혜자 수를 7%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
- 다.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제9조제1항제2,3호)
 - 수혜받은 장학생의 재력을 구에서는 알 수 없고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규정 삭제
 - 교육부예규 제247호('96.9.2)에 의거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규정정비
- 라. 장학기금 확보에 대하여(제11조)
 - 장학금 기금 확보에 대하여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 규정은 기부금품관련규 제법에 위배됨으로 삭제

3. 의견제출

- 가. 관련근거
 - 제3차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결정[기예05090-1589호('99.5.28)]
 -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기예11010-442호('98.2.18)]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위배[기예13300-317호('98.2.6)]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라. 조례(안) : 따로 붙임.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학금의 지급은 남·녀 새마을지도자(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장학생은 예산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p> <p>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경력자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p> <p>① 장학금의 지급은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_____ _____ (현행과 같음)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p>제6조(장학생의 정원)</p> <p>장학생은 구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p>	<p>제6조(장학생의 정원)</p> <p>장학생은 예산범위내에서 정한다.</p>
<p>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 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p>제9조(지급 및 정지) ① _____ _____ _____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_____ (현행과 같음)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_____ _____ (현행과 같음) 5. _____ (현행과 같음)
<p>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p>	<p>제11조(장학기금 확보) _____ _____ _____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p>